

2021학년도 학생회 재선거 시행 규칙

제 1 조 (선거일정)

별첨 <2021학년도 학생회(총학, 단과대) 선거 일정표> 참조

제 2 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1.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입후보자 등록 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총학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선관위”라 칭하며,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단선관위”라 칭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 등록원 (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각서(소정양식) 1부.

마.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서(소정양식) 1부

(단, 단대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에는 단대별 재학생 인원비례로 한다. 인사대 - 30인, 사범대 - 30인, 자연대 - 30인, ICT융합대 - 30인, 문화예술대 - 30인, 경영대 - 30인)

바. 선거공약 및 상징문 1부, 입후보자 소견문 1부

사. 명함판 사진 1매.

아. 참관인 명단 1부.

자. 선거운동본부 공식명칭 1부, 메인 칼라 2색

(색종이를 사용하여 명도, 채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단 흰색과 검정색은 사용 금지)

2. 입후보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총.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본 대학교에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나.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다.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바.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② 단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본 대학교에 4학기 이상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나.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다.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바.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사. 임기가 연임되지 않는 자.

3.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제 3 조 (사전선거운동) 모든 사전선거운동을 금한다.

1. 사전선거운동이란 후보자 확정공고 이전에 본 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배포, 부착 및 공식적인 정책선전, 공개적인 선거공약 추천 행위, 공개 선거운동원 모집 및 각종 여론조사 등을 의미한다.
2. 모든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공고 이후부터 가능하다.
3. 추천인 서명서는 해당 선관위에서 용지를 제작한다. 단, 추천인 서명 작업은 후보자의 등록절차로 간주하여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선거운동본부 사용과 출입)

1. 선거운동본부는 발족일로부터 선거운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2. 선거운동본부의 장소는 후보자가 정하되 해당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3. 선거 운동원은 중선관위실 및 단선관위실 및 타 선거운동본부를 출입할 수 없다.
4. 코로나 19 확산 시 선거운동본부실을 사용함에 있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즉시 경고로 처리한다.

제 5 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란 선거 운동복 착용, 홍보물 배포, 부착 및 기타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말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가. 회원 이외의 사람

나. 현 정.부학생회장, 현 단대학생회장과 부회장, 집행부, 현 학부(과)학생회장과 차기 학부(과)학생회장으로 임명된 자

다. 당해 중앙선관위원과 단대선관위원

라. 나, 다 항의 직을 사퇴한 자는 사퇴처리가 중선관위에서 확인된 직후부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유세 외의 독자적인 집회를 할 수 없다. 단, 동아리실, 강의실, 학부(과)학생회실에서의 유세는 개별유세로 고려하여 인정한다.
4.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각 선거운동 본부 당 총학 2인 7개조 이내, 단과대학 2-3인 5개조 이내로 한다. (후보자포함)

나. 투표당일 선거운동원은 해당 선관위에서 사전 승인된 선거운동복을 착용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단대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메인칼라와 동일한 색상의 선거운동복을 착용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 선거운동본부측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원의 명단을 해당 선관위에 2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시 선거운동원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선거운동원 및 유권자들과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운동원이 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 6 조 (오프라인 홍보물)

1. 모든 홍보물은 타 선거운동본부의 메인 칼라를 사용할 수 없다.
2. 모든 홍보물은 선거운동본부의 메인칼라와 백색 및 흑색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홍보물 제작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세 가지 이하의 색은 해당 선관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3. 모든 홍보물은 해당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운동본부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를 할 수 없다.
4. 홍보물의 종류 및 매수는 아래와 같이 한한다.

가. 평면 홍보물

- 전지 100매(인사대/사범대/자연대/경영대/문화예술대/ICT융합대 - 각 40매)
- 포스터 4절지 이하 500매(인사대/사범대/자연대/경영대/문화예술대/ICT융합대 - 각 100매)
- 화장실 홍보지 A4 이하 500매
(인사대/사범대/자연대/경영대/문화예술대/ICT융합대 - 각 100매)

나. 배포용 인쇄 홍보물

- 신문 2절지 이하 1종 3000부
(인사대/사범대/자연대/경영대/문화예술대/ICT융합대 - 각 1,000부)
- 팜플렛 B5 이하 8면 1종 2000부
(인사대/사범대/자연대/경영대/문화예술대/ICT융합대 - 각 700부)
- 리플렛 B4 이하 1매 1종 3000부
(인사대/사범대/자연대/경영대/문화예술대/ICT융합대 - 각 1,000부)
- 자료집 B5 이하 32면 1종 1,000부(단, 단대선거시에는 자료집을 포함하지 않는다)

5. 모든 홍보물에는 해당 선관위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단, 온라인 홍보물은 제외한다.

가. 모든 홍보물은 해당 선관위가 검토한 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홍보물 접수시간은 해당선관위에서 정한다.

나. 모든 평면 홍보물에는 적색 스탬프 도장을 날인한다.

다. 파손된 부착 홍보물은 모두 도장을 찍어 회수하며, 해당 선관위에서 폐기,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매수에서 교환된 홍보물은 제외된다. 단, 선거운동본부에서 임의로 폐기한 홍보물은 파손 여부를 해당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총 매수에 포함된다.

라. 배포용 홍보물은 배포 전에 해당 선관위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신문, 팜플렛, 리플렛, 자료집은 인쇄 전에 해당 선관위가 확인하여 도장을 찍되, 배포 전에 완성본 전체를 선거운동본부가 아닌 해당 선관위에서 인수받아 부수를 확인한 후 배포한다. 여분의 홍보물은 해당 선관위에서

보관한다.

6. 홍보물 부착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부착 홍보물은 선거운동본부 별로 해당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나. 홍보물 부착시 테이프와 스테플러, 타커만을 사용한다.

7. 가게시판 설치는 중선관위의 재량에 따른다.

제 7 조 (온라인 홍보물)

1. 온라인 홍보물의 형식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제한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홍보물(메일, 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내용을 해당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내용은 배포할 수 없다.
3. 온라인으로 홍보물 배포 시 다음 각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가. 온라인 홍보물의 경우 해당 선관위의 승인을 득한 홍보물이라는 내용을 해당 선관위에서 정한 문구로 유권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홍보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해당 문구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다.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문구를 삽입해서는 안된다.

라.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과 게시된 홍보물이 상이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SNS)

1.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홍보의 게시는 선거운동본부의 공식 계정만 허용한다.
2. 선거운동원은 투표 시작 시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 SNS계정으로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의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통해 선거를 독려할 수 있다.

가. 온라인 홍보를 할 선거운동원은 명단과 함께 개인의 SNS 계정을 제출한다.

나. 비공개 계정의 선거운동원은 온라인 홍보를 금지한다.

다.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글의 반응에 대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단, 단순한 질의응답은 가능하다.

3. 선거운동원은 선본부에서 우선 발행한 홍보물 외 선거 독려와 관련한 어떠한 홍보물도 독자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

제 9 조 (단체채팅방)

1. 각 학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한 카카오톡 홍보의 전권은 해당 학과의 학회장에게 있다.

2. 선본장이 아닌 정, 부후보를 비롯한 제3자가 온라인 홍보와 관련하여 학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의 강요나 금품 전달이 있을 시 주의를 생략하고 경고로 처리한다.
3.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선거운동본부에게 있다.
 - 가. 중선관위의 심의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나.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서 변경된 홍보물로 게시가 이루어질 경우
 - 다.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4.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단체채팅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행한다.
 - 가. 유세기간 전까지는 홍보물을 게시함에 있어 2회의 제한을 둔다.
 - 나. 유세 및 투표기간에는 홍보물을 게시할 때 1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단체채팅방에 참가하고 있는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때, 학우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해당 단체채팅방에서의 홍보를 즉각 중단한다.

제 10 조 (유세)

1. 각 선거운동본부당 소견발표 영상은 50분으로 제한한다.
2. 소견발표 영상은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작하며 교내 홈페이지의 광장>학생회소식에서 배포한다.
3. 소견발표 영상은 유세기간에만 게시, 배포할 수 있다.

제 11 조 (선거비용)

1. 선거비용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 선거지원금과 중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일정액의 후보지원금에 한한다. 이 경우 중선관위에서 지급하는 후보지원금의 용도는 중선관위에서 정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상업적인 장소에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 12 조 (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는 투표 3일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서 작성, 보관한다.
2. 선거인 명부는 수정,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관위에서 1부, 학생복지팀에서 1부 소지한다
3. 유권자는 투표전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4.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의 누락, 오기 또는 무자격자가 등재되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관위에서는 이의가 인정된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투표당일 선거인 명부의 열람은 해당 선관위만 가능하며, 타인열람은 금한다.
6. 선거인 명부는 투표 종료 후 해당 선관위실로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이 휴대한다.

제 13 조 (참관인)

1. 참관인은 후보등록 당시의 것을 우선으로 하되, 변경 시 선거운동본부는 이를 사전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개표당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3. 참관인은 해당 선관위의 요구 시 학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참관인은 마지막 날 투표가 완료되면 해당 선관위원과 함께 지정된 개표장소로 이동하여 개표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제 14 조 (투표 장소)

1. 온라인으로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투표장소를 규정하지 않는다.

제 15 조 (투표시간)

1. 투표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제 16 조 (기표절차)

1. 유권자는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를 실시한다.

제 17 조 (개표)

1. 투표가 끝나는 즉시 해당 선관위원과 참관인은 지정된 개표장으로 이동하여 개표 및 집계를 시작한다.
2. 개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 6인 이하, 중앙선관위원 12인 이하 입회하여 진행한다.
(단, 단대선거 개표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 2인 이하, 단대선관위원 2인 이하, 중앙선관위원 7인 이하 입회한다).
3. 개표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 중선관위원장의 집계사무개시 선언

나. 해당 선관위원과 각 참관인의 선거인명부 상 투표자 집계

다. 해당 선관위원과 각 참관인의 온라인 집계 결과 확인

라. 총 투표자수, 유효표 및 무효표수, 각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4. 온라인 투표 시 특기사항

가. 투표 시 온라인 투표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는 투표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8 조 (경고)

1. 다음의 경우 해당 선관위는 회의를 통하여 경고를 결정하며 위반근거와 결정내용을 후보자에게 제시한 후 경고를 주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 가. 총학생회 회칙 및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을 위반한 경우
 - 나. 본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관위원장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주의내용을 선거운동본부에게 전달한다.
3. 주의에 대하여 선거운동본부 측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고로 처리한다.

제 19 조 (입후보 자격박탈)

1. 세 차례의 경고 발생 시 해당 선관위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이 경우 해당 선관위는 세 차례의 경고내용 및 각각에 대한 근거자료, 자격박탈과 관련한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 20 조 (투표일의 연기)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1시간 이상 선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 마지막 날 투표시간을 지연된 시간만큼 연기할 수 있다.

제 21 조 (선거종료작업)

1. 각 선거운동본부는 당선확정 3일 이내에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홍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당선확정 3일 이내에 예산 집행내역을 결산하여 공고하고, 중선관위에서 지급한 후보지원금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중선관위에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다음날 정오까지 선거운동본부로 사용한 방을 본래의 상태로 비워야 한다.

제 22 조 (부칙)

1.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변경 사항은 중선관위에서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2. 단대선관위가 총학생회 회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및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선관위가 이를 대신한다.